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체계 구축 〉
■ 김영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101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체계 구축	2
※ 참고자료	7
1.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7
2.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8

I. 제안경위

2024년 9월 20일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9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한 간 공유하는 물이 민족 공동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남북한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를 포함하는 물관리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북 공동으로 수자원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에서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한 물관리 부문 협력체계 구축을 증진하기 위하여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시책의 수립과 시행, 남북한 공유하천 위기대응 체계 구축, 북한 수자원의 정기적인 조사 및 분석체계 구축, 남북한 공유하천 공동관리를 위한 국제기구,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현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7조).

Ⅲ. 검토의견

1. 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체계 구축

개정안은 남북한 물관리 부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세부 분야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해 노력하도록 현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7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한 간 공유하는 물이 민족 공동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남북한 공유 하천의 공동관리를 포함하는 물관리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체계 구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남북한 물관리 부문 협력체계 구축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남북 간 연락망 등 남북한 공유하천 위기대응 체계 구축 3. 북한 수자원의 정기적인 조사 및 분석체계 구축 4. 남북한 공유하천 공동관리를 위한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u>협력체계 구축</u> ② 제1항에 따른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시책의 수립·시행, 위기대응 체계 구축, 북한 수자원 조사의 범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표] 개정안의 주요내용

구분	내용
제1호	•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시책 의 수립 및 시행
제2호	• 남북 간 연락망 등 남북한 공유하천 위기대응 체계 구축
제3호	• 북한 수자원의 정기적인 조사 및 분석체계 구축
제4호	• 남북한 공유하천 공동관리를 위한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현행법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한 공유하천²⁾의 공동관리 등 물관리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법 제37조(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한 간 공유하는 물이 민족 공동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남북한 공유 하천의 공동관리를 포함하는 물관리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임진강은 유역면적의 63%, 북한강은 23%가 북한에 속하며, 북한은 임진강 유역 11개소 및 북한강 유역 13개소에 댐을 건설하였음(남한은 임진강 유역 2개소, 북한강 유역 7개소)

[남북 공유하천 현황]

구분	임진강			북한강		
	전체	남한	북한	전체	남한	북한
유역면적 [km ²]	8,118 (100.0%)	3,009 (37.1%)	5,109 (62.9%)	10,124 (100.0%)	7,787 (76.9%)	2,337 (23.1%)
유로연장 [km]	254.6 (100.0%)	92.0 (36.1%)	162.6 (63.9%)	291.3 (100.0%)	158.8 (54.5%)	132.5 (45.5%)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1~'30)을 수립하여 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접경지역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구축·운영중이며(참고자료1),

통일부는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3~'27)'에 따라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대응 등 남북 공유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임(참고자료2).

[표] 남북한 물관리 협력 관련 기본계획 수립 현황

구분	세부과제	주요 내용
제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환경부)	남북 공유하천 위기대응 체계 구축 및 공동관리 추진	- 접경지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 임진강 물재해 대책 협의회 운영 등
	북한 수자원 조사분석 체계 구축	- 북한 수자원 시설물 현황 조사 및 최신화 - 북한 수자원 동향조사 보고서 발간 등
제4차 남북관계발 전기본계획 (통일부)	호혜적실사구시적 남북관계 정립 - 남북 접경지역 재해재난 대응	- 북한 댐 방류 시 사전통보 촉구 -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대응 등(필승교 수위, 댐 모니터링 등)

자료: 환경부

그런데 현행법의 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 규정은 구체적인 이행 방법이 함께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선언적 성격의 조항에 불과하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북 공동으로 수자원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³⁾.

3) “기후위기 등 대비 북한강 임진강 등 남북 공유하천 관리 강화 추진”, 에너지데일리, 2024. 9. 20.

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와 가뭄 위험은 더욱 커지는 가운데 북한강, 임진강 등 공유하천의 하류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해당 하천 관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임.⁴⁾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시책의 수립과 시행(안 제1호), 남북한 공유하천 위기대응 체계 구축(안 제2호), 북한 수자원의 정기적인 조사 및 분석체계 구축(안 제3호), 남북한 공유하천 공동관리를 위한 국제기구,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4호) 등 법률에 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하여 현행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다만,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현행법 제37조(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노력의무규정⁵⁾으로, 물관리에 대한 기본이념과 방향을 제시하는 「물관리기본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노력의무규정을 구체화한 사항을 나열하여 명시하는 것은 동 법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임.⁶⁾

4)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2013년~2022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연평균 약 3,195억원(행정안전부, 재해연보, 2022, 19p, 최근 10년간 연도별 원인별 피해현황)으로 해마다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8월 집중호우 시 섬진강댐·용담댐·함천댐 하류지역에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하면서 수자원(댐, 하천 등) 관리를 통한 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5) 해당 입법의 기본이념·목적에 제시하고, 그 방향에 연유한 당사자의 노력을 추상적으로 촉구하는 취지의 규정을 말함(노력의무규정의 입법론적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박영도, 2015. 204p).

6) 환경부는 현행법 제37조에 따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시책의 수립과 시행(안 제1호), ②남북한 공유하천 위기대응 체계 구축(안 제2호) 및 ③북한 수자원의 정기적인 조사 및 분석체계 구축(안 제3호) 과제를 현재 이행 중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관계 부처인 통일부는 「물관리기본법」에 구체적 협력 과제를 별도로 법제화하기보다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기존 법체계 내에서 협력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인 바, 개정안에 대하여는 그 입법취지와 함께 각 부처 의견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37

※ 참고자료

1.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1~'30, 환경부 소관)⁷⁾

□ 분야별 추진전략

- '전략6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에 '남북 공유하천 관리 및 북한 수자원 조사·분석체계 구축' 과제 포함

6대 분야별 추진 전략 25개 과제	전략 01 물환경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① 오염원 관리 강화를 통한 목표 수질 달성 ②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 및 지하수 보전 관리 ③ 하천유역의 지속가능성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④ 수변공간 관리체계의 정비 및 강문화 활성화 ⑤ 물환경 관리 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	전략 02 지속가능한 물이용 체계 확립 ① 미래 물부족 대비를 위한 수요관리 강화기반 조성 ② 공급시설 효율화 및 수원 다변화를 통한 수자원 확보 ③ 서로 배려하는 합리적 물 배분 기반 마련 ④ 국민이 믿고 마시는 수도물 공급 ⑤ 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지역의 물 기본권 보장	전략 03 물재해 안전체계 구축 ① 가뭄관리체계 선진화 및 극한가뭄 대응체계 구축 ② 기반시설 홍수안전 강화 및 예방 투자 확대 ③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홍수 대응체계 구축 ④ 홍수 예보체계 고도화 ⑤ 도시 침수 관리체계 강화
	전략 04 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 ① 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② 물 관련 조사·분석·정보화 관리 체계 지능화 ③ 세계 최고 수준의 물관리 기술 확보	전략 05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① 재해예방 위한 선제적 유지관리 체계 마련 ② 생활안전 관리수준 상향 ③ 스마트 기술을 통한 유지관리 성능 고도화	전략 06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 ① 물 관련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통한 국제 위상 제고 ② 물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 및 활력 제고 ③ 국내기업 해외 진출 활성화 ④ 남북 공유하천 관리 및 북한 수자원 조사·분석체계 구축

□ 남북 공유하천 관련 과제 주요 내용

- (정책목표)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공유하천(북한강, 임진강)의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북한 수자원의 정기적 조사·분석 추진

세부과제	주요 내용
• 남북 공유하천 위기대응 체계 구축 및 공동관리 추진	- 접경지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 임진강 물재해 대책 협의회 운영 등
• 북한 수자원의 정기적인 조사·분석체계 구축	- 북한 수자원 시설물 현황 조사 및 최신화 - 북한 수자원 동향조사 보고서 발간 등

7) 자료: 환경부

2.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3~'27, 통일부 소관)⁸⁾

□ 중점 추진과제

- '②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內 목표 중 '호혜적·실사구시적 남북관계 정립'
- '남북 접경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재해재난 대비·대응' 과제 포함



□ 남북 공유하천 관련 과제 주요 내용

○ '23년 실적

- 북한 댐 방류 시 사전 통보 촉구(6.30., 7.17.)
 -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 수해방지시설 현장점검(7.5., 통일부장관)
 -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대응* 실시
- * △필승교 수위, 댐 수문 등 모니터링, △상황별 유관기관 통보, 경보방송, 하류 순찰 등 조치

○ 추진 계획

- 북한 댐 방류 시 사전 통보 촉구
- 임진강·북한강 유역 면적강수량 상시 감시 및 예측정보 생산·제공
- 홍수기 접경지역 모니터링 강화 및 강우 시 유관기관 합동 대응

8) 자료: 환경부